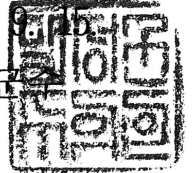


(재)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 안	2145
변 호	

제출일자 : 2022.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- (재)달성복지재단 사무실을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, 화원시장 201호를 (재)달성복지재단의 비영리사업 운영을 위한 달성시니어클럽 사무실 및 달성군장난감도서관으로 사용하고, 이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관련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제1항제4호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(사용료 감면) 제5항제2의2호

3. 주요내용

- (재)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
가. 사 용 자 : (재)달성복지재단
나. 허가재산 : 화원시장 201호(화원읍 비슬로512길 66)
다. 사용면적 : 783.03㎡(전용 596.43㎡, 공용 186.6㎡)
라. 면제적용 : 면제 동의안 의결 후 ~ 이전 시
마. 사용목적 : (재)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
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② ~ ③ : 생략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① ~ ④ : 생략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2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
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4.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⑥ ~ ⑦ : 생략